

2016년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 교부 청구서

2016년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 청구합니다.

사 업 명	금 액
지성·감성·인성 창의교육 협력교사 지원	원

입금계좌

- 은행명 :
- 계좌번호 :
- 예금주 :

2016. 2. .

서울○○○학교장 ○ ○ ○ (직인)

강북구청장 귀하

■ 첨부서류

1. 사업실행계획서 1부.
2. 보조금 지원 약정서 1부.
3. 통장사본 1부.

2016년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실행 계획서

사업유형	(예시)학력증진	사업명	지성·감성·인성 창의교육 협력교사 지원
담당부서	방과후학교부	담당자	김○○(☎*****)

사업목적

-
-

사업개요

- 기 간 :
- 내 용
-
-

세부추진일정

-
-

기대효과

-

사업비

- 총 액 : 천원(보조금 : 천원, 자부담 : 천원)
- 항목별 산출내역 (단위 : 원)

지출항목	금 액	산 출 근 거
총 액		

※ 교부된 금액에 맞게 지출 항목 및 자부담액을 조정하여 제출할 것

2016년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 지원 약정서

2016년 강북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“강북구”와 “○○학교”는 사업추진에 관한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.

사 업 명	금 액
지성·감성·인성 창의교육 협력교사 지원	원

제1조(목적) 본 약정은 강북구로부터 2016년 혁신교육지구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학교가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신의성실의 원칙) “강북구”와 “○○학교”는 본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3조(공익추구, 비정치, 비영리의 원칙) “강북구”와 “○○학교”는 공익을 우선하여 사업을 추진하며,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적 활동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체의 활동을 배제한다.

제4조(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준수의 원칙) “○○학교”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준수하고, 활동내용이 시민 생활질서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5조(사업실시 및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)

- ① “○○학교”는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부득이하게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“강북구”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“○○학교”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정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즉시 이 사실을 “강북구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)

- ①“○○학교”는 “강북구”가 지정한 기간까지 사업실행계획서와 보조금교부청구서를 “강북구”에 제출하고 “강북구”는 사업개시 전일까지 “○○학교”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.
- ②“○○학교”는 “강북구”로부터 교부 받은 보조금을 당해 사업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특히 “강북구”가 인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관리비, 식비 등 경상적 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.
- ③“○○학교”는 사업비에 보조금교부결정 통지 시 결정된 보조금에 대한 상당비율의 자체부담금이 포함될 수 있다.

제7조(사업추진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)

- ①“○○학교”는 사업의 완료 또는 중단·폐지되었거나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종료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“강북구”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“○○학교”는 제1항에 의한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발생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산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“강북구”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8조(회계장부의 비치) “○○학교”는 사업에 대한 회계장부를 자체 회계장부와는 별도로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,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.

제9조(약정의 해지) “강북구”는 “○○학교”가 본 약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업추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“○○학교”에 사업추진의 중단 및 본 약정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“○○학교”는 이에 반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“강북구”의 요구에 따라야 하고 관련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집행한 보조금 및 집행잔액에 대하여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제10조(권리 의무의 양도제한) “○○학교”는 본 약정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.

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강북구”와 “○○학교” 쌍방 간에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16년 2월 일

강북구청장 박겸수 (직인)

○○학교장 ○○○ (직인)